

## 도로 무단점용 행위에 대한 행정대집행 계고 공시송달 공고

도로법 제38조(도로의 점용) 및 제45조(도로에 관한 금지행위) 등을 위반하여 동법 제65조 및 행정대집행법 제3조 규정에 의거 의무자에게 대집행 계고서를 통지하려 하였으나, 성명·주소지 등의 미상으로 송달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과 행정대집행법 시행령 제5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2년 4월 27일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1. 공고제목 : 도로 무단점용 행위에 대한 행정대집행 계고 공시송달
2. 공고기간 : 2012. 04. 27. ~ 2012. 05. 07.
3. 공시송달 대상내용 : 별첨(붙임 참조)
4. 지시 및 고지사항
  - 공고기간내에 자진철회하여 주시기 바라며, 자진철회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대집행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 행정대집행은 인천광역시 서구청이 집행하거나 또는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집행하게 하고 그 비용이 발생할 경우 징수하겠습니다.
5. 기타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인천광역시 서구청 건설과(☎032-560-448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공 시 송 달 서

1. 의무자의 주거·성명 : 미상

2. 대집행 할 대상물 및 소재지

- 대상물: 가건물(포장마차)

- 소재지: 인천광역시 서구 검암동 554도

3. 송달할 서류의 종류 : 행정대집행을 위한 계고

의무자에게 송달할 서류가 송달 받을 자의 주소 불명 등으로 인해 송달할 수 없기에 행정대집행법 시행령 제5조에 의거 이를 공시송달 공고 합니다.

2012년 4월 27일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